

# 2019 규정 개정사항

구분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<b>지방 조직 운영 개정</b>	제11조【기능】지방본부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지방본부 집행위원 선출 2. 지방본부 회계감사위원 선출 3. 지방본부 활동보고 및 사업계획안 심의 4. 지부로부터 건의된 사항 및 결의문 채택 5. 기타 지방본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	제11조【기능】① 지방본부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지방본부위원장을 제외한 집행위원 신임에 관한 사항 2. 지방본부 회계감사위원 신임에 관한 사항 3. 지방본부 활동보고 및 사업계획안 의 심의의결 4. 지부로부터 건의된 사항 및 결의문 채택 5. 기타 지방본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	(조문변경) 전국대의원 대회의 기능 과 일치조정
	제41조【구성】 지부집행위원회는 지부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41조【구성】 지부집행위원회는 지부장과 지부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.	(조문변경) 지부장 문구 추가

구분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<b>지방 조직 운영 부칙</b>		부칙(2019. 3.00) 제 1 조【시행일】본 규약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. 제 2 조【준용】본 규약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	

구분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처무 규정 개정	<p>제10조【문서보존기간】 문서보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p>1. 영구보존문서  <u>각종 회의록</u>, 조합원명부, 가입원서, 인사관계서류, 조합연혁, 단체 협약, 규약, 규정, <u>쟁의관계서류</u>, 상징관계서류, 재산, <u>국제관계서류일체</u>, 인감부, 정기간행물 등록증, 설립신고, 기금관리대장</p> <p>2. 10년 보존문서  <u>비품대장</u>, <u>도서대장</u> 및 각종 통계서류 및 협정서</p> <p>3. 5년 보존문서  <u>문서접수대장</u>, <u>문서발송대장</u>, 신청서류일체, 건의문 및 성명서</p> <p>4. 3년 보존문서  출장관계 서류일체, 재정관계 서류일체, <u>출근부</u>, <u>신분증발행대장(서식 제10호)</u>, 성금 및 기부금대장, 고정사항 관계 철, 본 조합의 각종 선거관련 문서, 일반문서 및 잡문서</p>	<p>제10조【문서보존기간】 문서보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p>1. 영구보존문서  조합원명부, 가입원서, 인사관계서류, 조합연혁, 단체협약, 규약, 규정, 상징관계서류, 재산, 인감부, 정기간행물 등록증, 설립신고, 기금관리대장</p> <p>2. 10년 보존문서  <u>쟁의관계서류</u>, <u>국제관계 서류일체</u>, 각종 통계서류 및 협정서</p> <p>3. 5년 보존문서  <u>비품대장</u>, 신청서류일체, 건의문 및 성명서</p> <p>4. 3년 보존문서  <u>문서접수대장</u>, <u>문서발송대장</u>, <u>각종 회의록</u>, 출장관계 서류일체, 재정관계 서류일체, 성금 및 기부금대장, 고정사항 관계철, 본 조합의 각종 선거관련 문서, 일반문서 및 잡문서</p>	(조문변경) 법령 및 현실에 맞게 문서 보존기간 변경
	<p>제67조【사표의 수리】 사표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p>1. 지부집행위원은 소속지부장</p> <p>2. 지방본부집행위원, 지방회계감사위원, 지부장 및 분회장은 지방본부위원장</p> <p>3. 부위원장, 사무총장, 각 실장, 회계감사위원, 중앙상무집행위원, 중앙위원, 지방본부위원장은 위원장</p> <p>4. 전국대의원은 위원장, 지방본부대의원은 지방본부위원장</p> <p>5. 위원장은 중앙위원회</p>	<p>제67조【사표의 수리】 사표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p>1. 지부집행위원은 소속지부장</p> <p>2. 지방본부집행위원, 지방회계감사위원, 지부장 및 분회장은 지방본부위원장</p> <p>3. 부위원장, 사무총장, 각 실장, 회계감사위원, 중앙상무집행위원, 중앙위원, 지방본부위원장은 위원장</p> <p><b>4. 대의원은 위원장</b></p> <p>5. 위원장은 중앙위원회</p>	(조문변경) 명칭 변경 불필요사항 수정
	<p>제75조【신분증 발급】 위원장은 임원 및 간부직원에게 신분증을 발행할 수 있다. 신분증 발행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(서식 제12호)</p>	<p><b>제75조【신분증 발급】 삭제</b>  <b>서식 제10호 삭제</b></p>	(조문삭제) 현실 반영 조문 삭제

구분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처무 규정 개정 부칙		<p>부칙(2019. 3.00)</p> <p>제 1 조【시행일】본 규약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 2 조【준용】본 규약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</p>	



구분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회계 규정 개정	제14조【업무담당 임명 및 책임】①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중앙본부는 재정국장이, 지방본부는 <u>지원국장(이하 "재정담당자" 라 칭한다)</u> 이 전담하며, 수급계획 및 집행에 따른 제반사항은 결재권자(위원장, 지방본부위원장)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.	제14조【업무담당 임명 및 책임】①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중앙본부는 재정국장이, 지방본부는 <u>재정담당자(지방본부 집행위원 중 지방위원장이 지명한 자)</u> 가 전담하며, 수급계획 및 집행에 따른 제반사항은 결재권자(위원장, 지방본부위원장)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.	(조문변경) 현실에 맞게 조문수정
	제30조【예산성립 및 지출】① 기 성립된 예산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출한다. 1. 재정자립기금, 쟁의기금, 상급단체비, 신분보장기금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비율에 의해서 적립하여야 하고, 적립된 기금은 무급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 회사의 미지급 금액 및 조합원 복지증진, 쟁의행위를 위한 사업비, 상급단체 가입 의무금 및 조합활동에 의한 신분보장기금으로 지출하며 지출 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할 수 있다. 10. 비품비는 내용년수 1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액 <u>50만원</u> 이상의 장치구 및 소모되지 않는 제품 구입비로 지출한다. ③ 직무판공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출하며,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 5. 중앙본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조합원의 직무활동 추진비는 실장 지급기준에 의한다.<일부 삭제>	제30조【예산성립 및 지출】① 기 성립된 예산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출한다. 1. 재정자립기금, 쟁의기금, 상급단체비, 신분보장기금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비율에 의해서 적립하여야 하고, 적립된 기금은 무급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 회사의 미지급 금액 및 <u>직원 임금(복리후생비 포함)</u> , 조합원 복지증진, 쟁의행위를 위한 사업비, 상급단체 가입 의무금 및 조합활동에 의한 신분보장기금으로 지출하며 지출 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할 수 있다. 10. 비품비는 내용년수 1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액 <u>100만원</u> 이상의 장치구 및 소모되지 않는 제품 구입비로 지출한다.. ③ 직무판공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출하며,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 5. 중앙본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조합원의 직무활동 추진비는 실장 지급기준에 의한다.<일부 삭제>	(조문변경) 현실에 맞게 고정자산 범 위 조정, 명칭 변경
	제41조【자산의 구분】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. ② 고정자산은 토지, 건물, 기계장치, 차량, 비품 등으로 구분하며 내용연수 1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액 <u>50만원</u> 이상으로 한다.	제41조【자산의 구분】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. ② 고정자산은 토지, 건물, 기계장치, 차량, 비품 등으로 구분하며 내용연수 1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액 <u>100만원</u> 이상으로 한다.	(조문변경) 현실에 맞게 고정자산 범 위 조정

구분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회계 규정 개정 부칙		부칙(2019. 3.00) 제 1 조【시행일】본 규약은 전국대의원대회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. 제 2 조【준용】본 규약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	

구분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여비 규정 개정	<p>(별표 1)</p> <p>1 국내여비 정액표</p> <p>□직위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1단계(위원장,사무총장)</li> <li>○2단계(자문위원,부위원장,실장,지방본부위원 장)</li> <li>○3단계(중앙본부국장,회계감사위원~직원)</li> </ul> <p>□숙박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1단계(6만원),2단계(5만원),3단계(4만원)</li> </ul> <p>□일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12,000원</li> </ul> <p>□국외일비 (단위 : 미화달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가 지역 40</li> </ul> <p>□국외숙박료 (단위 : 미화달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가 지역(150),나 지역(125),다 지역(100)</li> </ul> <p>□국외 (나 지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럽주(가 지역 제외), 대양주, 캐나다, 멕 시코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쿠웨이트, 사우디아라비 아, 바레인, 터어키, 싱가포르, 필리핀, 태국</li> </ul>	<p>(별표 1)</p> <p>1 국내여비 정액표</p> <p>□직위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3단계 회계감사위원삭제 후 세분화</li> <li>-중앙회계감사위원 2단계에 신설</li> <li>-지방회계감사위원 3단계에 신설</li> </ul> <p>□숙박료 현실수준 반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1단계(9만원),2단계(7만원),3단계(6만원)</li> </ul> <p>□일비 현실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13,000원</li> </ul> <p>□국외일비 수준향상(단위 : 미화달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가 지역 50</li> </ul> <p>□국외숙박료 현실화(단위 : 미화달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가 지역(180),나 지역(150),다 지역(120)</li> </ul> <p>□국외 (나 지역) 국가수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럽주(가 지역 제외), 대양주, 캐나다, 멕 시코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쿠웨이트, 사우디아라 비아, 바레인, 터어키, 싱가포르</li> </ul>	(조문변경) 3단계에 표 시된 회계감 사위원 세분 화 및 각종여비 상 향조정

구분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여비 규정 개정 부칙		<p>부칙(2019. 3.00)</p> <p>제 1 조【시행일】본 규약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 2 조【준용】본 규약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</p>	

구분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회계 감사 규정 개정		<p>제13조【재감사】</p> <p>1. 중앙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청에 의해 재감사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, 해당지방본부 회계감사를 재실시할 수 있고, 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를 위원장과 지방본부위원장에게 제출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지방본부위원장의 요청 시</li> <li>② 지방회계감사위원회의 요청 시</li> <li>③ 지방본부 대의원대회 결과 재감사 요구 결의 시</li> <li>④ 기타 재정사고 등 위원장이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</li> </ul> <p>2. 재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조치하여야 하며, 재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한다.</p> <p>3. 제8조 3항은 본조에 따른 재감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(조문신설)

구분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회계 감사 규정 개정 부칙		<p>부칙(2019. 3.00)</p> <p>제 1 조【시행일】본 규약은 전국대의원대회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 2 조【준용】본 규약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</p>	